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8 (화) 평창군수(재무과장)

나. 회부일자 : 2005. 10. 25(화)

다. 상정일자 : 2005. 10. 25(화)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

2. 제 안 이 유

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법률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문구를 새로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3. 주 요 골 자

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
  - · 전용면적 40㎡ 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재산세.도시계획세 면제
  - ·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 재산세 50% 경감
  - ·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 재산세 25% 경감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
  - · 전용면적 40㎡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및 공무원을 위한 임대목적 주택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 · 전용면적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 재산세 50% 경감
  - ·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 재산세 25% 경감

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관련조문 및 문구 수정

다.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이하 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세율 1000분의 1.5로 개정

4. 검 토 결 과

가. 본 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문구를 새로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 전용면적 40㎡ 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50%를,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25%를 경감토록 각각 개정하였고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 전용면적 40㎡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및 공무원을 위한 임대목적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 전용면적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50%를 전용면적 85㎡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25%를 각각 경감하였고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 조례의 사문화와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이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5로 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 이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

제출년월일 : 200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법률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문구를 새로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
- 전용면적 40㎡ 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재산세.도시계획세 면제
-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 재산세 50% 경감
-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 재산세 25% 경감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
- 전용면적 40㎡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및 공무원을 위한 임대목적 주택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 전용면적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 재산세 50% 경감
-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 재산세 25% 경감

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관련조문 및 문구 수정

다.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이하 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세율 1000분의 1.5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조의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의 제6호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①---------- ---------- ---------- ---------- ---------- ---------- ---------- ---------- ---------- ---------.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 세 표 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①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향교재산법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강원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임대주택관련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통보

1. 세무회계과-1475(2005.1.26)호와 관련입니다.

2.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경제장관간담회 결정과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임대주택관련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갈음하여 지방의회 의결 등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1부.
2)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내용 1부.

강 원 도 지 사

수신자 춘천시장(세무과장),원주시장(세무과장),강릉시장(세정과장),동해시장(세무과장),태백시장(세무과장),속초시장(세무과장),삼척시장(세무과장),홍천군수(재무과장),횡성군수(재무과장),영월군수(재무과장),평창군수(재무과장),정선군수(재무과장),철원군수(세무과장),화천군수(재무과장),양

협조자

시행 세무회계과-6106 (2005.04.26.) 접수 재무과-3212 (2005.04.26.)
우 200-700 강원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 / www.provin.gangwon.kr
전화 033-249-2881 전송 / ktyhj@provin.gangwon.kr / 공개

00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00시군세감면조례중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00도00시 · 군세감면조례표준안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공공단체 ·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강원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재래시장관련 시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470(2005.3.9)호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상 관련법령인「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3.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조례개정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지 사

수신자 춘천시장(세무과장),원주시장(세무과장),강릉시장(세정과장),동해시장(세무과장),태백시장(세무과장),속초시장(세무과장),삼척시장(세무과장),홍천군수(재무과장),횡성군수(재무과장),영월군수(재무과장),평창군수(재무과장),정선군수(재무과장),철원군수(세무과장),화천군수(재무과장),양

협조자

시행 세무회계과-3942 (2005.03.15.) 접수 재무과-1946 (2005.03.15.)
우 200-700 강원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 / www.provin.gangwon.kr
전화 033-249-2881 전송 / ktyhj@provin.gangwon.kr / 공개

○○시·군·구 감면조례개정안

현 행	개 정
제00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제0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 ---------- ---------- -------.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 ---------- ---------- ----------.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 ---------- ---------- ---------- ----------.

강원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시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843(2005.5.11)호와 관련입니다.

2. 2005.1.5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시?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이첩 통보하오니

3.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지 사

수신자 춘천시장(세무과장),원주시장(세무과장),강릉시장(세정과장),동해시장(재무과장),태백시장(세무과장),속초시장(세무과장),삼척시장(세무과장),홍천군수(재무과장),횡성군수(재무과장),영월군수(재무과장),평창군수(재무과장),정선군수(재무과장),철원군수(세무과장),화천군수(재무과장),양

전결 05/12

지방세무주사 김태영 지방행정사무관 박암식 세무회계과장 김완수

협조자

시행 세무회계과-7073 (2005.05.12.) 접수 재무과-3784 (2005.05.12.)
우 200-700 강원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 / www.provin.gangwon.kr
전화 033-249-2881 전송 / ktyhj@provin.gangwon.kr / 공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안)